

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번호	8
------	-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14.

제 출 자 : 송파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따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송파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: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

나. 출연내용

- 송파문화재단의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송파의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

다.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액: 69,211천원 [붙임2]

라. 출연금 결정

-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

마. 출연의 필요성

-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은 송파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으로,
- 송파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(인건비, 운영비)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 (관련법규)

-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재산) 및 제21조(재정지원)

관 련 법 령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>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>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4조(출자·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설립 목적의 달성, 존립기간의 만료,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
3.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□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5조(재산)

-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국가·서울특별시·송파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- 2. 제1호 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
 - 3. 사업 수익금,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
 - 4.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
-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,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.
- ④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〈신설 2019.7.1.〉

제21조(재정지원)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붙임2]

출 연 금 액(안)

☐ 출연금 총액: 69,211천원

☐ 출연금 세부내역

가. 문화재단 인건비 등: 66,171천원 ※ 연봉 및 수당, 보험 등 포함

구 분	예산(안)
1) 보 수	41,926천원
<문화공연팀> 3명	31,675천원
· 팀원(6급) : 11,425천원×1명	11,425천원
· 팀원(6급) : 11,425천원×1명	11,425천원
· 팀원(7급) : 8,825천원×1명	8,825천원
<문화사업팀> 1명	10,251천원
· 팀원(6급) : 10,251천원×1명	10,251천원
2) 퇴직급여 및 4대 보험	10,277천원
· 퇴직급여	4,469천원
·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(국민,건강,고용,산재)	5,808천원
<제수당 및 복리후생비, 인건비 인상분>	13,968천원
· 시간외 근무수당	3,223천원
· 가족수당	1,280천원
· 기술수당	378천원
· 인건비 인상	2,213천원
· 명절휴가비	4,445천원
· 명절휴가비 인상	156천원
· 선택적 복지비	2,273천원

나. 기본경비: 3,040천원

구 분		3,040천원
〈문화공연팀〉		3,040천원
· 급량비		1,440천원
· 여비		1,600천원

〈의안 소관 부서명〉

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	
연 락 처	(02) 2147-2806